

청원심사추진사항

□ 청원서 개요

1. 접수일시 : 2002. 10. 30 (수)
2. 청원자 및 청원요지

청원자	청원명	청원요지	소개의원
거창읍 중앙리 궁전A 2-106. 김재기외 6명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 마령재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	1950년 음력 6월 6일에서 11일까지 약 6일 간에 걸쳐 1차 25명, 2차 약30명 정도를 합 천군의 권빈재와 마령재에서 집단으로 죽음을 당한 진상 규명과 유골수습, 억울하게 돌아 가신 분들의 진혼을 위한 위령사업	이수정
남상면 춘전리 63 맹판호외 22명	남상면 춘전리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	1950년 음력 7월 7일에서 28일까지 약 20일 간 남상면 춘전리 마을주민 김정근외 23명 이 안의면지서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학 살사건의 진상규명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들의 넋을 달래고 기리기 위한 위령사업	정연명 최용환
대동리 신흥1 101-403, 조성 만외 810명	전 위천면장 조병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진상규명	1948년 5·8 위천면 투표함 사건으로 인해 전 위천면장 조병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 여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추진계획

1. 청원 처리 방법 : 특위 활동, 소위원회에서 처리

2. 소위원회 구성 : 5 명

가. 위원장 : 최용환

나. 부위원장 : 김정희

다. 위 원 : 신현기, 이수정, 정연명

3. 조사기간 : 6개월

4. 조사방법

가. 소위원회에 일임하여 소위원회에서 처리후 특위 보고

나. 소위원회 활동 계획

- 증언속기 및 현장답사 (4회) : 합천 권빈재, 합천 마령재, 남상 춘전리, 위천면 등

- 유족 및 관련자 간담회 : 1 ~ 2회

- 관련자료제출 요구 : 유족회, 관련단체

- 자료수집 출장 : 3 ~ 4회

5. 조사결과 조치 : 결과보고서 발간, 관계기관 청원

6. 기 타

■ 참고자료

1. 산청군 시천·삼장면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청원

가. 접수일시 : 1999. 8. 10

나. 청 원 자 : 산청군 시천면 정맹근 외 19명

다. 청원내용 : 1948년 여순반란사건을 일으킨 반란군이 지리산에 숨어들면서 이들을 토벌하려는 아군들이 양민들을 통비분자로 몰아 무차별 학살한 사건으로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원혼을 달래게 하여 달라는 유가족들의 청원임

라. 처리과정

- 99. 10. 7 : 본회의 상정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9명)

진상조사반 편성(4명, 기간 6개월)

- 진상조사반 활동

- 99. 10. 11 : 유족회와 간담회

- 00. 3. 4 : 시천면사무소에서 증언 청취

- 00. 3. 7 : 삼장면사무소에서 증언 청취

- 00. 3. 14 : 시천면회의실에서 증언청취사항 정리

- 00. 4. 2 : 시천양민학살사건 위령제

- 00. 5. 19 : 당시 주둔 대대장 방문 증언 청취 (대전)

- 조사활동결과보고 : 00. 7. 24. 본회의 보고

- 입법청원 : 1차 - 00. 1. 27 산청군의회의회장 - 소위원회 미회부

2차 - 01. 5. 12 산청군의회의회장-행자위원회-계류중

2. 전남 화순군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청원

가. 접수일시 : 1998. 9. 19, 9. 25

나. 청 원 자 : 전남 화순군 오옥탁 외 37명, 김범순 외 67명

다. 청원내용 :

- 6·25전쟁시 다산마을 주민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국군에 의해 집단으로 학살 당하고 마을 가옥이 전소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의 진상 조사를 희망한다는 탄원서 접수
- 지역신문에 남면 다산리 주민 35명과 춘양면 용두리 주민 4명이 국군에 의해 총살되었다고 보도

라. 처리과정

- 98. 8. 1 : 필요에 의해 본회의 상정, 특별위원회 구성(6명, 14개월)
- 98. 9. 18 : 특위 활동계획 의결
 - 피해 신고서 접수, 진상조사, 자료수집, 명예회복추진
- 98. 12. 31 : 양민학살 피해자 신고접수결과 83명 접수
- 99. 4. 20 : 특위위원 간담회 (자료수집을 위한 도서관 등 방문 결정)
- 99.3.19, 4.22, 5.20, 6.16
 - : 피해신고자 면담조사 및 현지답사
- 99. 7. 9 : 특위위원 간담회 (자료수집에 중점)
- 99. 8. 24 : 국방부 관련자료 요청
- 99.9.4, 9.11, 9.16
 - : 광주광역시, 사회연구소, 안종철 연구소 자료수집차 방문
- 99. 9. 27 : 특위회의, 보고서 초안, 향후방향
- 99. 9. 30 : 특위회의,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 진상조사건의 : 대통령, 국회의장, 행자부, 국방부 등

청원 소개의 건서

본 건은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 마령재, 남상면 춘전리 등에서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 및 위천면 5.8사건 진상조사를 하여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 회복과 원혼을 달래 달라는 유가족들의 청원입니다

청원의 내용으로는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 마령재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건은 민간인에 대하여 정당한 재판도 없이 1950년 음력 6월 6일에서 11일, 약 6일에 걸쳐서 1차 약 25명, 2차 약 30명 정도를 합천 권빈재, 마령재에서의 집단 죽임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유골 수습,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진혼을 위한 위령사업을 하여 달라는 것과

남상면 춘전리 민간인 희생자 진상조사건은 1949년 음력 7월 7일을 시작으로 약 20일 동안에 걸쳐서 남상면 춘전리 주민 20대와 30대 안팎의 청년들만 골라서, 그 당시 빨치산 부대에 심부름을 해 주었다는 이유와 공비 토벌이 어려운 것이 통비분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이들을 통비분자로 규정하여 안의지서에 불러다 모진 고문을 한 후 안의초등학교 뒷산 대밭골과 안의 밤숲 근처 등지에서 김정근 외 23명의 양민이 죽음을 당한 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원혼을 달래게 하여 달라는 것이며

위천 5·8사건 진상규명건은 1948년 5월 8일 공비들의 위천면 습격으로 위천지서, 북상지서를 불지르고 난동을 부린 후 물러가고, 다음날 경찰들이 위천면장 등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풀려났으나 위천면장은 고문의 휴유증으로 5·10일 사망한 사건으로, 전 위천면장 조병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억울한 희생에 대하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유가족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밝은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를 소개한다는 것이 소개서의 이유입니다.

탄원서 (嘆願書)

안녕(安寧) 하셨습니까?

위천면장(渭川面長) 이었던 조병욱(趙炳昱)씨는 성품(性品)이 강직결백(剛直潔白)하고 의협심(義俠心)이 남달리 강(強)하였으며 지효(至孝)하여 그의 부친(父親) 임종시(臨終時)에 단지수혈(斷指輸血) 하였으나 명(命)을 연장(連長)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평소효자(平素孝子)로 향내유림(鄉內儒林)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분으로서 다년간(多年間) 위천면서기(渭川面書記)로 근무(勤務)하던 중(中)에 부친상(父親喪)을 당(當)하여 사임(辭任)하고 가사(家事)를 돌보고 있었는데 1948년(年) 2월(月) 말일(末日)에 위천면장(渭川面長) 발령(發令)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元來) 신의(信義)가 또한 대단(大端)한 분이라 면(面) 행정(行政) 경험(經驗)을 바탕으로 불법(不法)과 불의(不義)에는 타협(妥協)할 줄 모르고 모든 책무(責務)를 성실(誠實)과 인내(忍耐)로써 추진(推進)해 가던 중(中)에 그해 5월(月) 10일(日)에 제헌국회의원총선거일(制憲國會議員總選舉日)로 공고(公告)되었습니다. 건국(建國)이래(建國以來) 처음 실시(實施)하는 국가대사(國家大事)인지라 제반(諸般) 행정적(行政的) 여건(與件)과 선거사안(選舉事案)이 복잡산적(複雜山積)하여 1주일에 1~2번{집에서 면사무소(面事務所)까지 보름재 山길로 10리 허(許)}정도 잠깐씩 다녀갔는데 마지막 집에서 출근(出勤)한지 5일(日)만인 5월(月) 8일(日) 저녁에 투표함(投票函)이 위천지서(渭川支署)에 보관중(保管中)이어서 그날 밤에도 지서(支署)에 있었는데 공비(共匪)들의 불의(不意)의 지서(支署) 습격으로 경찰(警察)이 후퇴(後退)함에 따라 면장(面長)도 동시(同時)에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밤에 공비들은 위천(渭川), 북상(北上) 2개(個) 지서(支署)를 불지르고 난동(亂動)을 부리는데 또 무기(武器)를 가진 경찰이 후퇴(後退)하고 모든 공무원(公務員)이 피신(避身)하는 판국에 면장(面長)도 난(亂)을 피(避)하였다가 날이 밝아오고 면소재지(面所在地)가 조용해지자 면사무소

(面事務所)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면사무소(面事務所)는 아무런 피해(被害)도 없었는데도 불구(不拘)하고 거창(居昌)경찰서 경찰(警察)이 이유여하(理由如何)를 막론(莫論)하고 몽둥이와 위커 구두발로 무차별(無差別) 구타(毆打)하고 지서장(支署長)과 지서경비원(支署警備員)이던 부락민(部落民) 각리동(各里洞) 유지(有志) 닥치는 대로 면사무소(面事務所) 마당으로 끌고 와서 무조건(無條件) 공비(共匪)로 몰아세워 너무나 무자비(無慈悲)하게 구타(毆打)하여 지금(只今)도 그 몸서리치는 후유증(後遺症)으로 고생(苦生)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된 위천면장(渭川面長)은 아무런 죄(罪)도 없이 당일(當日) 면숙직원(面宿職員)과 지서장(支署長) 지서(支署)경비원과 부락(部落) 유지(有志) 일부(一部)는 다시 경찰서 마당으로 끌려가 또 못매를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당일(當日)에 거의 풀어 주었으나 지서(支署)경비원들은 19일(日)만에 석방(釋放)하였으며 면장(面長)은 아무런 죄(罪)가 없다고 항변(抗辯)하자 전기고문(電氣拷問)과 함께 몽둥이와 구두발로 너무나 잔인(殘忍)하게 구타(毆打)하여 전신(全身)의 옷은 찢어지고 선혈(鮮血)이 낭자(狼藉)한 채 얼마나 목이 닳는지 고무신에다 자기(自己)의 소변을 받아 마시는 것을 본 {당시 위천면서기(渭川面書記)였던 무월동(舞月洞)에 살고 있는 신용탁(愼鏞卓)씨의 말} 동생(同生){조병호(趙炳昊)씨, 1989. 10. 2일(日) 별세(別世)}이 너무나 애처(哀悽)로워서 경찰서 청소(清掃)하는 양동이에다 물을 길러 먹이다가 겨우 운신(運身)하는 동생(同生)까지 또 매질을 하는 마치 이성(理性)을 잃은 인간백정(人間白丁)들의 광란(狂亂)의 난장(亂場)판 같은 처참(淒慘)한 광경(光景) 정말 사람으로서는 목불인견(目不忍見) 이였습니다.

위천(渭川)에서부터 같이 매를 맞은 동생(同生)이 그날 9일(日) 오후(午後) 늦게 역지로 몸을 추스려 당가를 들고 가서 면장(面長)의 신병(身柄)을 요구(要求)하였으나 끝내 거절(拒絶) 당(當)하고 말았으며 밥한술 약(藥) 한첩은 고사(固辭)하고 그렇게도 갈구(渴求)하던 물 한모금 먹이지 아니한 채 완전(完全)히 사경(死境)에 이른 중환자(重患者)를 늦서리

가 내리는 5월(月) 초순(初旬)의 찬밤에 경찰서 유치장(留置場) 찬마루 바닥에 처넣어 익일(翌日)(5月 10日) 아침에 겨우 출입허가(出入許可)를 얻어 들어가 보니 피와 흙투성이로 범벅이 된 채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苦痛)스러웠는지 양쪽눈을 부릅뜨고 싸늘한 시체(屍體)로 변(變)하여 있었습니다.

36세(才)의 젊은 나이로 면장(面長) 발령(發令)을 받은 지 2개월(個月) 9일(日)만에 풍성(豐盛)했던 역량(力量)을 펼쳐 보지도 못해 보고 억울하고 외롭게 참혹(慘酷)한 죽음을 당(當)한 것입니다. 전장(戰場)에서의 적(敵)도 부상(負傷)을 입으면 즉각(卽刻) 병원(病院)으로 후송(後送)시켜 치료부터 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진대 아무런 과오(過誤)도 없는 우리의 면장(面長)을 국민(國民)의 생명(生命)과 권익(權益)을 보호(保護)해야 할 경찰(警察)로서 원시적(原始的)인 방법(方法)으로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이런 불법적(不法的)이고 잔인무도(殘忍無道)한 살인(殺人) 경찰이 어느 자유민주국가(自由民主國家)에서 존재(存在)한단 말입니까?

사건(事件) 직후(直後) 정말 거창검찰지청장(居昌檢察支廳長)이 김석구 거창(居昌)경찰서장에게 사건(事件) 수사를 명령(命令) 하였는데 어느 순경이 검사(檢事)목에다 총(銃)을 들이대고 검사(檢事)목에는 총(銃)알이 안 들어 가느냐 하며 {조병호(趙炳昊)씨의 말} 거짓말 같은 협박(脅迫)을 하였다고 하니 이런 하극상(下剋上)이 난무(亂舞)하던 사회(社會)인지라 수사(搜查)가 진행(進行)될 까닭이 없었습니다.

전통적(傳統的)인 유교가문(儒敎家門)에서 절대적(絶對的)인 가장(家長)을 중심(中心)으로 순종(順從)만을 미덕(美德)으로 살아온 가정(家庭)에서 하루아침에 청천(晴天)의 벽력을 당(當)하고 보니 온 집안은 풍비박산(風飛雹散)이 되었고 유족(遺族)으로는 미망인(未亡人) 이기윤(李己潤)씨와 장남(長男) 민행(玟行) {위천국민학교 6학년 재학중(渭川國民學敎 6學年 在學中)}과 기행(琪行), 원행(元行) 3형제(兄弟)가 있었으나 가세(家勢)가 파탄(破綻)되어 3형제(兄弟) 모두가 고등교육(高等教育)을 받지 못

하고 장남(長男)은 부산(釜山)에서 개인(個人) 철공소(鐵工所) 공원(工員)으로 일하다 1990년(年) 5월(月) 22일(日)에 병사(病死)하고 2, 3남(男)은 외항선(外航船) 선원(船員)으로 있으며 금년(今年) 82세(才)난 노모(老母)는 고향자택(故鄉自宅)에서 관절통(關節痛)으로 시달리며 홀로 여생(餘生)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칭(世稱) 오팔 사건(事件) 회오리가 지나고 질서(秩序)와 행정(行政)이 회복(回復)되자 위천면장(渭川面長)이 너무 억울하고 통탄(痛歎)스런 죽음이 인정(認定)되어 익년(翌年) 3월(月)에 위천면민장(渭川面民葬)으로 장례(葬禮)는 치렀으나 4개성상(四個星霜)이 넘도록 이 피명맺힌 원한(怨恨)을 어디 누구에게도 호소(呼訴) 한번 못해 보고 침묵(沈默)으로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歲月)이 약(藥)인지라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怨望)하며 또 원망(怨望)한들 무슨 소용(所用)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當時) 고문(拷問)했던 경찰이나 책임(責任)층에 있던 자(者)들도 고희(古稀)가 넘었거나 이 세상(世上)에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과거의 잘못을 사과(謝過)하는 뜻에서 국가차원(國家次元)에서 제반여건(諸般與件)에 상응(相應)하는 위자료(慰籍料)를 배상(賠償)하여 구천허공(九泉虛空)을 헤매는 고인(故人)의 원혼(怨魂)을 천만분(千萬分)의 하나라도 위로(慰勞)하여 드리고 가난과 소외(疏外)된 유족(遺族)들에게 용기(勇氣)와 활력(活力)을 심어주어 재기(再起)의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를 우리 모두들은 간곡히 소원(所願)하면서 서명(署名) 날인(捺印)하여 진정(眞情)으로 탄원(嘆願) 하옵니다.

지금(只今)도 거창군내(居昌郡內) 살고 있는 50대(代) 후반(後半)되는 사람이면 위천(渭川), 북상(北上) 오팔 사건(事件)하면 위천면장(面長)이 원통하게 희생(犧牲)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別)로 없을 것입니다

1990. 7.

慶南 居昌郡 渭川面 茅東里 761 趙準行